

2021. 1. 25.(월)

농생명문화 살려 다시 치솟는
한반도 첫 수도 **고창**

이 장 회 의 자 료



유네스코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UNESCO Gochang Biosphere Reserve

공 음 면

□ 회보는 공문서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의한 일반문서이며, 내용에 따라 1년 이상 보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장은 주민에게 홍보하고 열람시켜야 합니다.

<p>총 무 팀 (560-824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 동정 및 사건 등 보고 협조 1 ○ 상수도 민원 처리 내용 홍보 1 ○ 고창군 스마트 알리미 앱 설치 안내..... 2
<p>맞춤형복지팀 (560-823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주요개정사항 홍보 3 ○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에 따른 신청 홍보 5 ○ 2021년도 기초연금 주요개정사항 안내 6 ○ 2021년 경로 아·미용비 지원사업 추진 안내 6 ○ 2021년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신규 설치 수요조사 7 ○ 노인요가복지시설(경로당,노인시설)운영중단 조치유지 안내 7 ○ 2021년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신청 안내 ... 7 ○ 2021년 발달장애인활동서비스 신청 안내 7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단속에 따른 홍보 8 ○ 유해야생동물 기피제 수요조사..... 8 ○ 폐가전제품 방문 무료수거 이용홍보..... 9 ○ 「나눔과 봉사의 기부천국 만들기」 참여 협조 9 ○ 공음면 일반쓰레기 수거일 및 폐영농자재 배출시간 조정 9 ○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 및 대여사업 홍보 10 ○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관리 안내 10 ○ 라돈 측정기 무상대여 서비스 홍보(알림) 11 ○ 생활쓰레기 배출방법 안내 및 쓰레기봉투 판매가격 안내 11

민원행정팀 (560-824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안내 …… 22 ○ 고창군청 수요일 야간 여권 발급·교부 잠정 중단 알림 …… 22 ○ 작은영화관 “동리시네마” 영화관 입장료 할인 안내 …… 22 ○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안내 …… 22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창군 도서관 이용시간 변경 안내… 23 ○ 작은영화관 「동리시네마」 운영시간 변경 안내 …… 24
산업경제팀 (560-82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년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신청 안내 …… 26 ○ 2021년 새내기 농업학교 모집 알림 …… 26 ○ 「농어민부채경감법」 개정에 따른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 알림 · 27 ○ 2021년 청년농업인 생생동아리 지원사업 알림 …… 27 ○ 2021년 귀농귀촌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알림 …… 27 ○ 2020년산 국산 두류(콩·팥·녹두) 수매안내 …… 28 ○ 고창 농특산물 설명절 꾸러미 선물세트 판매 홍보 …… 28 ○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지원사업 안내 …… 28 ○ 고창군 농어촌육성사업지원기금사업 신청 및 홍보 …… 29 ○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신청안내 …… 29 ○ 반려견 준수사항 안내 및 야생화된 들개 포획 협조 요청 …… 30 ○ 2021년 고창 농특산품 통합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 신청안내 30 ○ 2021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폐지 알림 …… 30 ○ 겨울철 재해예방 및 피해 최소화 대책 홍보 …… 31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안내 …… 31 ○ 2021년 두류·맥류 계약재배사업 추진 안내 …… 32 ○ 농지 임대수탁사업 신청 안내 및 홍보 …… 32
보건지소 (560-825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 19 감염병 예방홍보 …… 34 ○ 안전혈관 숫자알기 상설교육장 운영 …… 34 ○ 치매조기검진(선별검사)대상 연령 확대 홍보 …… 34 ○ 국가 암(무료 암검진) 및 건강검진 안내 …… 35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등록 신청 …… 35 ○ 폐렴구균 및 대상포진 예방접종 안내 …… 35

【총무팀】

□ 마을 동정 및 사건 등 보고 협조

- 마을단위 각종 사건 및 사고, 주민사망 또는 결혼, 마을행사, 미담사례 등을
- 종합행정담당직원 또는 면사무소 총무팀(560-8241)으로 수시 보고

□ 상하수도 민원 처리 내용 홍보

- 스마트 문자 고지 신청
 - 매월 사용료의 1% 감면(최소 200원 ~ 최대 1,000원)
 - 문자 고지 신청 시 종이 고지서 미발송
 - 신청전화 : 관리팀 ☎ 063-560-8971 ~ 8975
- 폐전 신청(급수시설 철거)
 - 주택 및 건축물 철거 시 급수 폐전신청서 제출
 - 보조사업(빈집철거, 재해위험구역 이주, 토지·건물 보상 등) 대상자도 급수 폐전신청서 제출
 - 계량기 최종 지침 확인하여 사용료 정산 후 폐전 실시
 - 미 폐전 시 구경별 요금 부과되며 누수 및 계량기 매몰·망실 사례발생
 - ※ 계량기 매몰·망실 시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수리 설치
 - ※ 수도시설을 무단으로 변조하거나 훼손 시 2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고창군 상수도급수 조례 제30조, 제34조, 제58조, 제59조)
- 민원 처리 내용
 - 명의변경 및 수도요금 정산(이사, 매매)
 - 명의변경 : 신규 수용가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작성
 -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신규 수도 사용자와 기존 수도 사용자등은 수도요금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 ※ 확인사항 : 기존 자동이체 해지 및 요금 정산 유무

※ 미 정산 된 체납요금은 신규 수도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고창군 상수도급수 조례 제30조, 제32조)

○ 자동이체 신청

- 가까운 주거래 은행에서 직접 방문 신청(지로번호 6104845)
- 읍·면사무소나 상하수도사업소에 방문 또는 문자, 팩스신청
- 필요서류 : 자동이체 신청서 + 예금주 신분증 + 통장 사본
- 신청서식 : 읍·면사무소 비치
- 신청전화 : 관리팀 ☎ 063) 560 - 8971 ~ 8975
- 문자신청 : 010-9560-8972 (신분증, 통장 사본 첨부)
- 팩스신청 : FAX 063) 560 - 8999 (신분증, 통장 사본 첨부)

○ 누수 감면 신청(가정용에 한함)

- 읍·면사무소나 상하수도사업소에 방문 또는 전화신청
- 필요서류 : 누수 발생 신고서, 공사 전 중 후 사진 각 1부
사진 없을 시 공사비 영수증
- 신청전화 : 관리팀 ☎ 063) 560 - 8975

○ 요금 감면 신청

- 읍·면사무소나 상하수도사업소에 방문
- 필요서류 : 생계 · 의료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한 부모 조손가정 - 주민등록 등본
다자녀(19세 미만 3명 이상) - 주민등록 등본
- 신청전화 : 관리팀 ☎ 063) 560 - 8975

□ 고창군 스마트 알리미 앱 설치 안내

○ 붙임

【맞춤형복지팀】

□ 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주요개정사항 홍보

○ 생계급여에 한하여 부양의무자 폐지

주요 변경내용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수급(권)자 가구에 노인·한부모가족,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1) 적용대상 요건

○ 수급(권)자 가구 요건

- 65세이상 노인을 포함 수급(권)자 가구로 노인이 아닌 가구원 포함한 해당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자격 책정 가구 중 부 또는 모가 30세이상인 한부모가구를 포함한 해당가구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포함 수급(권)자 가구로, 비장애인을 포함한 해당 가구

○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요건(소득 및 재산기준 요건 모두 충족 필요)

- (소득기준) 부양의무자 실제 소득* 834만원 이하인 경우

*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선정시 반영되는 차감제외항목(교육비, 의료비 등) 미반영

- (재산기준) 금융재산, 부채 등 공제항목 미적용한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자동차 재산가액 합산 9억원 이하인 경우

(2) 적용대상 급여

○ 생계급여에 한하여 적용(주거·교육급여 부양의무자 기 폐지)

(3) 유의사항

○ 해당 노인·한부모가족의 부양의무자가 혼인한 딸(친정부모)인 경우, 일반 수급자의 혼인한 딸에게 적용하는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주거용·일반 재산 고려 x, 금융재산 2억 미만) 적용 하지 않음

※ 기존 수급자는 탈락이전까지 기존 기준 적용 가능

○ 해당 수급(권)자 가구의 부양의무자는 공적자료로만 조사하며,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소득신고서 등 별도의 서류 제출 불필요

○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보장기관이 확인한 경우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의결 가능

○ 금융정보 조회범위 확대

- 금융기관으로부터 요구불 예금의 최근 3개월 동안의 입금총액을 추가로 입수하여 부정수급 사전방지 및 관리

*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6조 개정(19.10.15)사항 반영

○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 반영비율 완화

- 부양의무자와 후원자 등의 사적이전소득 반영비율 상이→부양의무자도 후원자와 동일한 비율로 완화적용

* 부양의무기준 전체 폐지에정으므로 부양비 삭제에 따른 단일화 기준 필요

○ 기타 산정되는 재산 반영기간 연장

-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가 처분(증여)한 재산을 타재산증가분, 본인소비분, 자연적 소비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가액을 소진시까지 재산으로 산정

* 부양의무기준 단계적 폐지에 따른 부정수급 사전방지 및 관리 필요

○ 자동차 기준 완화

현행	개정(안)
(승용) 1600cc 미만이며, 10년이상 또는 150만원 미만	생계·의료 (승용) 1600cc 미만이며, 10년이상 또는 200만원 미만 (승합·화물) 1000cc 미만이며, 10년이상 또는 200만원 미만
(승합·화물) 1000cc 미만이며, 10년이상 또는 150만원 미만	주거·교육 (승용) ①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다음의 자동차 - 10년 이상 또는 500만원 미만 - 본인 및 가구원의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소유가 불가피한 자동차 ② 가구원이 6인이상 이거나 3명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서, 2,500cc미만 7인승 이상으로, 연식이 10년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 (승합·화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1]의 소형 이하 승합·화물자동차로 연식이 10년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

○ 대상자선정기준 및 급여지급 기준

-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20년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7,389,715
'21년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7,497,198

-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생계급여	527,158	897,594	1,161,173	1,424,752	1,688,331	1,951,910	2,216,915
(30%)	548,349	926,424	1,195,185	1,462,887	1,727,212	1,988,581	2,249,159
의료급여	702,878	1,196,792	1,548,231	1,899,670	2,251,108	2,602,547	2,955,886
(40%)	731,132	1,235,232	1,593,580	1,950,516	2,302,949	2,651,441	2,998,879
주거급여	790,737	1,346,391	1,741,760	2,137,128	2,532,497	2,927,866	3,325,372
(45%)	822,524	1,389,636	1,792,778	2,194,331	2,590,818	2,982,871	3,373,739
교육급여	878,597	1,495,990	1,935,289	2,374,587	2,813,886	3,253,184	3,694,858
(50%)	913,916	1,544,040	1,991,975	2,438,145	2,878,687	3,314,302	3,748,599

□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에 따른 신청 홍보

○ 지원기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사망한 자의 유족이 장례관리지침 내 장례관리 및 시신처리 등에 따라 화장했을 경우 화장 및 장례비 일부 지원

○ 지급범위

• (예방 조치) 코로나19의 전파 방지 및 예방 등의 조치에 지급된 실제 비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49조 등에 따라 코로나19 사망자 시신으로 인한 코로나19 전파 방지 및 예방하기 위해 시신처리지침 등에 따른 조치에 지출된 비용(장례식장, 화장시설 등)

구분	세부내역
인건비	- 시신 밀봉한 장례지도사 등 ※ 시설 이용비에 포함할 경우 중복 청구 불가
시설 이용비	- 장례식장 안치료, 화장시설 이용료 등
물품비	- 방수용 시신백(비닐),
기타	- 유족 보호 및 화장시설까지 이동에 지출된 경비

- 한도 : 사망자 1명당 3백만원 이내

※ 지자체 등이 사망자로 인한 코로나19 전파 방지 등을 위해 별도의 조치를 이행했을 경우 지방비로 조치비용을 별도 집행 가능(단, 중복 지급은 제외)

• 유족 장례비용(정액)

- 화장 등 감염방지 조치에 따라준 유족에 대하여 장례식장 대여료, 봉안당 안치 등을 감안하여 장례비 정액(1인당 10백만원)을 지급

* 사망자를 부양한 유족에게 우선 지급하되, 사망자가 단독 거주했을 경우 실제로 장례를 치른 자에게 지급하거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라 배우자, 자녀, 부모,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의 순서대로 지급

○ 신청서류 : 화장 증명서 또는 사망 진단서, 통장 사본

○ 문 의 : 맞춤형복지팀 ☎560-8245

□ 2021년도 기초연금 주요개정사항 안내

- 2021년 1월부터 만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하위 70%까지 월 최대 30만원 인상
- 2021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월 169만원
 - 부부가구: 월 270.4만원
- 2021년도부터 저소득자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규정 삭제
-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2021년도 기준연금액을 30만원으로 함.
- 2021년도 근로소득의 기본공제액을 월 98만원으로 함.
- 증여재산에서 제외하는 금액 기준
 - 2021년 기타증여재산에서 제외하는 자연적 소비금액은 단독가구는 1,991,975원, 부부가구는 2,438,145원으로 함.

□ 2021년 경로 이·미용비 지원사업 추진 안내

- 추진목적
 - 고창관내 장수 어르신들의 품위유지를 위한 이·미용비 지원을 통해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를 위해 민선7기 공약사업 일환으로 추진
- 신청 대상
 - 고창에 주소를 둔(2021.1.2.기준) 만80세(1941년까지) 이상 어르신
 - ※ 제외자 : 시설입소자, 장기 미거주자
- 신청 기간 : 2021년 1월 3일 ~ 2021년 1월 31일까지
- 사용 기간 : 상품권 발급일로부터 5년간
- 사용처: 고창관내 이·미용실
- 환수대상
 - 환수사유발생시(사망, 전출 등)
 - 타인이 부적절한 방법으로 사용시
- 문 의 : 맞춤형복지팀 ☎560-8246
 - ※ 경로 이·미용비 지원 신청서 **【붙임1】**

□ 2021년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신규설치 수요조사

- 2021년 신규설치 대상 : 고창군 7개소
- 신청기한 : 2021년 1월 25일 한
- 신청방법 : 마을단위로 신청 및 실태조사표 작성제출
- 문 의 : 맞춤형복지팀 ☎560-8232

□ 노인요기복지시설경로당 노인교실 운영중단 조치유지 안내

- 기 간 : 2020 . 12. 24. ~ 상황종료시까지
- 사회적 거리두기 및 5인 이상 모임 금지 연장에 따라 노인 여가복지시설 운영중단 조치를 유지하고자 함.
- 조치사항 : 외부인 출입제한, 경로당 운영중단안내문 부착 등
- 문 의 : 맞춤형복지팀 ☎560-8232

□ 2021년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사업대상
 - 주택 : 지붕슬레이트철거·처리, 지붕개량
 - 비주택(200㎡이하) 지붕 철거·처리
- ※ 우선순위 :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기타 취약계층⇨일반가구
- 지원범위 : 건물의 슬레이트의 해체·제거·운반·처리비 지원
 - ※ 폐건축 자재의 폐기물 처리는 본인 부담
- 유의사항
 - 신청자가 사업자 직접 선정 및 철거 처리 불가
 - 보관분 지원 불가
 - 관련서류는 건축물 소유자가 제출

□ 2021년 발달장애인활동서비스 신청 안내

- 대 상
 -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 : 만18세 이상 65세 미만 발달장애인
 - 청소년발달장애학생방과후활동서비스 : 만2세 이상 18세 미만중고등학교 재학 발달장애인 ※ 본인부담금 없음
 - 지원방법 : 바우처
 - 지원내용 : 문화 여가 체육 지조 활동 등 프로그램 제공
- 신청기간 : 연중신청
- 서비스제공 : 고창군장애인복지관(2월서비스제공)
- 문 의 : 맞춤형복지팀 ☎560-8246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단속에 따른 홍보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사태가 증가함에 따른 신고 및 단속 요청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
- 과태료 부과 대상
 - “주차가능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
 - 동 표지를 부착했다라도 “보행상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
→ 과태료 10만원
 - 주차 방해행위
→ 과태료 50만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자동차 표지 위·변조 행위
→ 과태료 100만원

▣ 관내 주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설치 장소

- 군청 및 읍·면사무소 등 공공기관 내
- 고창고인돌휴게소 상/하행선 내
- 고창 석정 휴스파 내
- 고창 하나로마트 내
- 고창읍내휴먼시아 등 공공주택 내 등

□ 유해야생동물 기피제 수요조사

-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의 농작물 접근 금지를 위한 기피제 구입 수요조사

마을명	성명	피해작물	수요량	비고

※사용량 : 1kg당 80m 사용(25g씩 2m 간격으로 살포)

- 기 한 : 2021. 01. 29.까지
- 문 의 : 맞춤형복지팀 ☎560-8232

□ 폐가전제품 방문 무료수거 이용홍보

- 이용기간 : 연중 지속 추진
- 예약전화 : 1599-0903
- 신청기간 : 매주 월~금(매일 08:00~18:00)
- 수거품목 : 냉장고, TV, 세탁기 등 가전제품 전체

○ 수거품목

분류	품목	비고
단일품목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가정용/업소용/냉동고/김치냉장고/쇼케이스 등 일반세탁기/드럼세탁기 등 실내기/실외기/일체형 등 CRT/LCD/LED/프로젝션
		전기오븐렌지, 공기청정기, 식기세척기, 식기건조기, 복사기, 자동판매기, 런닝머신, 냉온정수기, 전자레인지
세트품목	전축 (구형 오디오 세트), 데스크탑 PC (본체+모니터)	
다량 배출품목	수량기준 5개 이상 동시 배출 품목 PC 본체, 모니터(CRT,LCD), 노트북, 오디오(본체, 컴포넌트), 프린터(레이저, 잉크젯), 팩스밀리, 음식물처리기, 전기비데, 전기히터, 연수기, 가습기, 다리미, 선풍기, 믹서기, 청소기, VTR(DVD 포함), 휴대폰 등 소형가전	

※ 주민에게 적극적인 홍보로 무단방치 된 가전제품이 없도록 홍보협조

□ 「나눔과 봉사의 기부천국 만들기」 참여 협조

- 기 간 : 연중
- 대 상 : 지역주민 및 기업, 단체, 개인 사업체 등
- 기부방법 : 정기기부(착한가게, 착한가정, 1인 1계좌), 일시기부
- 내 용
 - 모금된 성금으로 공음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발굴한 후원자, 공음면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맞춤형 복지 제공
- 문 의 : 맞춤형복지팀 ☎560-8245

□ 공음면 일반쓰레기 수거일 및 폐영농자재 배출시간 조정

- 폐 영농자재 임시수거장소 : 작은목욕탕 옆
 - 배출시 면사무소에 방문, 신고서 작성 후, 담당자 확인받고, 담당자와 함께 안내하는 장소로 이동
- 배출시간 : 12시 ~ 13시30분
- 품 목 : 차광막, 부직포
- 문 의 : 정상규 미화원 ☎010-2393-3219
- ※ 5톤이상 다량배출자 및 농업법인 배출건 수거처리불가
- ※ 공음면 일반쓰레기 수거일 안내 【붙임2-1】
- ※ 영농폐기물 처리 주민안내 및 주의사항 【붙임2-2】
- ※ 영농폐기물 배출요령 및 절차 【붙임2-3】

□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 및 대여사업 홍보

<보장구 대여>

- 대여품목 : 수동 휠체어, 전동 스쿠터/휠체어
- 신청기간 : 상시

<보장구 점검 및 수리>

- 정비항목 : 보장구 점검 및 경정비
- 진행절차 : 장애인복지관 접수신청 후 점검 및 경정비 진행
- 신청방법 : 상담 후 신청서 작성
- 진행일시 : 평일 10:00~14:30
- ※ 수리비가 발생할 수 있음
- 문 의 : 고창군 장애인복지관 ☎070-5168-1141

□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관련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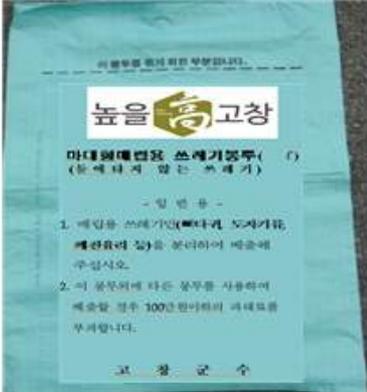
- (지원기간) 입원 또는 격리기간
- (지원대상)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자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
 - 보건소에서 발부한 입원치료·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 자
 -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의한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자
- (지원기준) 「신종감염병증후군 및 중증호흡기증후군(MERS) 발생에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보건복지부 고시가 정하는 생계지원 금액을 준용하여 1회(1개월분)에 한하여 지원
 - 다만, 입원 환자로 격리기간이 1개월을 초과할 경우 추가 지원 가능
-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서식 제1호) 1부
 - 신청인 통장(사본) 1부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서식 제3호) 각 1부
 -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문 의 : 맞춤형복지팀 ☎560-8245
- ※ 코로나19 감염증 예방행동 수칙 **【붙임3】**

□ 라돈 측정기 무상대여 서비스 홍보(알림)

- 대여기간 : 2일 (대여한 다음날 오후 6시까지 반납)
 - 기기 반납시 반드시 측정결과 값(휴대폰 촬영)을 제출해 주세요
- 대여장소 : 공음면사무소 맞춤형복지팀
- 대여방법 : 면사무소 방문, 신청서 작성 후 대여
- 보유대수 : 3대
- 사용방법 : 창문,방문 밀폐 → 라돈아이 전용전원 연결 → 1시간 정도 측정
 - ※ 라돈농도가 높을 경우 대처 방법 : 즉시 환기

□ 생활쓰레기 배출방법 안내 및 쓰레기봉투 판매가격 안내

- 소각시설 가동에 따른 배출 요령

 소각용(불에 타는 쓰레기) 비닐형(10ℓ, 20ℓ, 50ℓ, 75ℓ)	 매립용(불에 타지 않는 쓰레기) 마대형(20ℓ, 50ℓ)
	
휴지, 의류, 나무류, 비닐류 등	유리, 도자기류, 깨진거울 등

※ 생활쓰레기 배출시간 : 저녁 20:00부터 새벽 5시까지(토요일 제외)

※ 생활쓰레기 배출방법 안내 **【붙임4】**

- 쓰레기봉투 판매가격

구분	용도	용량 (ℓ)	형태	판매가격 (원)	비고
소각용 (불에 타는 생활 쓰레기)	일반용	10	비닐형	210	
	일반용	20	비닐형	400	
	일반용	50	비닐형	990	
	일반용	75	비닐형	1,470	
	재사용	10	비닐형	210	
	재사용	20	비닐형	400	
매립용 (불에 타지 않는 생활 쓰레기)	일반용	20	마대형	800	
	일반용	50	마대형	1,500	

붙임 2-1 공음면 일반쓰레기 수거일

요 일	마 을 명			
월	면소재지	장곡리	석교리	선동리
화	면소재지	신대리	구암리	두암리
수	면소재지	덕암리	예전리	용수리
목	면소재지	건동리	군유리	칠암리
금	면소재지	소재지 정리 (칠암리)		

음식물 쓰레기 : 월, 목 (환경시설사업소에서 직접 수거)

대형 폐기물 : 월 ~ 수 (목요일에 처리장 반입)

폐가전제품 : 1599-0903 / www.15990903.ok.kr

영농폐기물 처리 주민안내 및 주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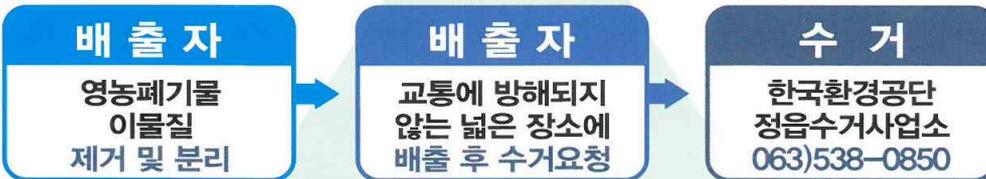
- 집중수거기간을 운영하여 배출 농가에게 읍면별 임시집하장으로 지정된 날짜에 배출토록 유도하여 수거 효율성 향상
 - 영농활동후 폐기물이 다량 배출되는 시기에 맞추어 조기에 수거
 - 농가의 대상품목 배출전 주의사항 안내
 - 트럭에 상차 전 영농폐기물에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후 최대한 부피를 줄여 끈을 묶거나 원통말이 정리 작업
 - 폐기물을 처리할 때 폐부직포, 폐차광막 등 수거항목별로 분리 배출*
 - * 집하장으로 수집 전에 원통말이 작업이 되지 않거나 뒤섞여 실어온 부직포 등에 대하여는 시정 보완 조치
 - 이장회의, 작목반 농가교육, 기관사회단체협의회, 주민자치협의회 및 마을방송을 통해 재활용불가 영농폐기물 수거안내와 적극적 홍보
 - ※ 사용 가능한 부직포 등은 지역 영농실정에 맞게 재활용토록 안내
 - 영농폐기물 운반, 수집(해당 농업인)
 - 읍면 수집장소로 자가 운반 및 하차 작업
 - 집하장등에서 영농폐기물 하차시 현장 근무자의 안내를 받아 하차 적재작업 실시
- 5톤이상 다량배출자 및 농업법인은 생태환경과에 사업장폐기물로 신고 후 직접 위탁 처리토록 안내
- 배출자(농업인)가 임시집하장 등에 가서 직접 하차작업을 하여야 하므로 2명 이상 차량에 탑승하여 집하장(또는 매립장)으로 가서 작업토록 안내

영농폐기물 배출요령 및 절차



재활용 가능

구분	폐비닐류	농약빈병	농약봉지
보상금 단가 (1kg당)	A등급 120원 B등급 100원 C등급 80원	유리 병 300원 플라스틱 1,600원	빈봉지 3,680원
보상금 지급	고창군	한국환경공단, 고창군	



재활용 불가능

종류	배출요령
폐차광막, 폐부직포, 폐반사필름	가로X세로 1mX1m크기로 잘라 원통말이 작업하여 묶어서 읍면의 지정 장소로 분리 배출
폐종묘포트, 기타	최대한 부피를 줄여 묶어서 읍면의 지정 장소로 배출



※ 5톤이상 다량배출자 : 고창군 생태환경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후 직접 위탁 처리

기 타

종류	배출요령
폐농약	농약병 또는 농약봉지재로 밀폐 후 마대 등에 모아서 배출



고창군



유네스코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UNESCO Gochang Biosphere Reserve

붙임 3 코로나19 감염증 예방행동 수칙



비누로 꼼꼼하게 30초 이상

[올바른 손씻기 6단계]

- 1 손바닥 (Palm to palm)
- 2 손등 (Back of hand to palm)
- 3 손가락 사이 (Between fingers)
- 4 두 손 모아 (Interlocking fingers)
- 5 엄지 손가락 (Thumb rotation)
- 6 손톱 밑 (Under nails)



**올바른 손씻기와 기침예절로
많은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기침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올바른 기침예절]

- 1 휴지나 손수건은 필수 (Use tissues or handkerchiefs)
- 2 옷 소매로 가리기 (Cover with elbow)
- 3 기침 후 비누로 손씻기 (Wash hands with soap after coughing)

발행일 2019.11.5.

붙임 4 생활쓰레기 배출방법



♻️ 생활쓰레기 배출 방법 안내



구분	배출방법	예시
생활쓰레기	소각용(불에 타는 쓰레기) : 비닐형 중량제 봉투 매립용(불에 타지 않는 쓰레기) : 마대형 중량제 봉투 <small>비재활용품 및 음식물 혼합 배출 금지</small>	
음식물 쓰레기	지정 수거일에 전용용기에 칩을 부착 후 오전 8시 이전에 배출 <small>(칩 미부착시 수거거부 / 배출문의 : 063-660-2891)</small>	
	음식물 쓰레기 캐시비 카드(RFID)를 이용하여 배출 <small>(캐시비 카드 충전 및 구입 : 편의점)</small>	
재활용품	PET, 종이류, 유리병, 스티로폼 완충재는 따로 배출 투명비닐봉투에 담아 배출	
스티로폼	이물질 및 부착표 등 제거후 끈으로 묶어 배출 <small>[제외 : 1회용 접시판, 과일 받침, 건축용, 압축된 스티로폼 등]</small>	
폐농약	밀봉후 액상 고상 구분, 읍면사무소에 배출 <small>(영농철 이후 한시적 배출 권장)</small>	
폐건전지	가까운 폐건전지 수거함 또는 읍면사무소 수거함에 배출	
폐의약품	2차 포장재 제거 후 약국, 보건소, 보건지소 배출	
폐가전제품	1599-0903 연락하여 배출(또는 www.15990903.or.kr)	



유네스코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가정 쓰레기의 분리 배출 방법 2021. 01. 01. 부터 바뀔니다!



구분	배출방법	배출품목(종류)
소각물쓰레기 (봉에 타는 쓰레기)	▶ 봉입지 ▶ 봉투 사용	봉투 봉지 고압수 장난감(인형) 유아용품
매립용 쓰레기 (봉에 타지 않는 쓰레기)	▶ 마대사용	유류(자동차기름) 사기(냄비) 유전자재 난방 배기 화분(식물)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섞이면 재활용이 어려워요'



종이팩 (우유팩, 우유팩 주스팩 등)
종이팩은 일반폐지와 다르게 고급종이(미용티슈 등)로 재활용 됩니다.
반드시 따로 분리 배출해주세요





- ▶ 내용물을 전부 고물과 분리 후 분리 배출한다.
- ▶ 봉지, 락 등 용이해지도록 깨끗한 거저한 후 배출한다.
- ▶ 일반 종이팩과 혼합하지 않게 봉지에 혼합물이 없게 배출한다.



PET병 (음료수, 식용용기(백주병))
뚜껑과 라벨은 분리해주세요





-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내용물을 제거하여 배출한다.
- ▶ 뚜껑상도, 부속품 등 잔여물 다른 부속품 제거한 후 배출한다.



플라스틱 (플라스틱 용기 등)
다른 폐질은 제거한 후 배출해주세요





- ▶ 내용물을 전부 고물과 분리 후 헹구는 등 내용물을 제거하여 배출한다.
- ▶ 뚜껑상도, 부속품 등 잔여물 다른 부속품 제거한 후 배출한다.



금속캔 (음료캔, 우유가스, 김치냉장고기판)
부탄가스 및 살충제 용기는 꼭 구멍을 뚫어서 배출해 주세요





- ▶ 내용물 비우고 10분 이상 헹구어 배출한다.
- ▶ 단열재 등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배출한다.
- ▶ 용기 크기에 부속품 등 내용물 제거한다.



유리병 (음료수, 주스, 화장품 병 등)
재활용이 불가능한 사기그릇, 깨진 거울은 건을 마대에 배출해주세요



▶ **반병 재사용을 위해 지켜주세요!**



- ▶ 내용물 전부 비우고 내장으로도 이물질은 분리 후 배출한다.

- 18 -

붙임 5 음식물쓰레기 제로실천운동 안내

음식물쓰레기 제로 실천운동

우리가 매일 배출하는 **음식물쓰레기!** 수분이 70% 차지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올바른 분리배출과 함께 수분을 제거한다면 음식물쓰레기를 확~ 줄일 수 있습니다.
주민 여러분! 오늘부터 **쓰레기 제로(Zero) 운동 3가지만 실천**해 볼까요!

01 하나! 음식물쓰레기 수분줄이기

- 우선 물빠짐 바구니에 담아 충분히 물기를 빼고
- 손으로 꼭꼭 눌러 물기를 한번 더 빼주세요
- 그리고 음식물 전용 용기에 담아서 배출하면 끝~~!

02 둘!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하기

- 고기 뼈, 게·조개껍데기, 1회용 티백 등은 음식물이 아닙니다.
- 음식물이 아닌 것은 생활쓰레기 봉투에 담아 배출하세요~

03 셋! 생활습관 바꾸기

- 장보기 전 필요한 품목 메모
- 냉장고는 정기적으로 정리하기
- 내용물 확인이 가능하도록 투명용기에 관리
- 음식점에서 주문할 때는 먹을 만큼만!



음식은 **먹을만큼만!**
음식물 **쓰레기**를 줄입니다.

재활용이 안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일반쓰레기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쓰레기는
구분해서 버립니다.



- 과일류 : 딱딱한 껍데기 (호두, 밤, 파인애플 등), 씨(복숭아, 살구 등)
- 육 류 : 털 및 뼈다귀 (소, 돼지, 닭 등)
 - ▶ 뼈에 살코기가 붙어있어 구분이 어려울 경우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
- 채소류 : 파, 미나리 등의 뿌리, 양파, 마늘, 생강, 옥수수 등의 껍질
- 어패류 : 패류 껍데기 (조개, 소라, 멍게, 전복, 꼬막, 굴 등)
 - ▶ 패류 껍데기에 살코기가 붙어있어 구분이 어려울 경우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
- 기 타 : 1회용 티백 (종이, 형검 등으로 포장된 1회용 녹차 등)

위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고 무단투기 또는 매립시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고창군



유네스코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12782323 2200 Hong Gochang Korea



보조배터리

**재활용이 된다는 사실!!!
아셨나요??**



모든 폐전자는 재활용이 됩니다. 이제부터 분리배출 해 주세요!!!



<가정에서>



보조배터리, RC카용 충전지, 휴대용 충전지, 전동공구용 충전지, 휘보드용/오토바이용 시동전지 등 재활용 가능

다 쓴 전지는 꼭! 폐전지 전용수거함에 배출해주세요

완구류, 소형가전에 사용된 폐전지는 제품에서 분리하여 폐전지 전용 수거함에 배출해주세요.

➡ 충전용 보조배터리나 건전지 제거가 안 된 완구류 등이 생활계 폐기물과 혼합될 경우
선별 및 재활용 과정에서 **화재 사고**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모든 전지는 재활용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분리배출해야 합니다.
- 가정에서 사용한 건전지는 가까운 [폐건전지 수거함]에 넣어주시거나, 지자체(시, 군, 구)에 문의하시면 수거에 관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전지를 임의로 분리 혹은 분해할 경우, 폭발 등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전지 형태 그대로 배출하세요. (전선이 있을 경우 그대로 배출)



【민원행정팀】

□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안내

- 시행기간 : 2020. 8. 5. ~ 2022. 8. 4.(2년간)
- 관련법령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및 시행령
- 협조사항 : 리별 지정보증인 보증서 발급대장 관리 협조

□ 고창군청 수요일 야간 여권 발급·교부 잠정 중단 안내

- 일 시 : 2020. 7. 22. ~ 코로나-19 상황 종료시까지
- 내 용 : 여권 발급신청 및 교부업무 중단

□ 작은영화관 “동리시네마” 영화관 입장료 할인 안내

- 할인기간 : 2020. 10. 30. ~ 예산 소진 시까지
- 관 랑 료 : 1,000원 * [붙임 1] 참조
- 유의사항 : 현장예약 및 발권에 한하여 할인 적용
- 문 의 처 : 작은영화관 동리시네마(☎063-564-1340)
- 협조사항 :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방문일지 작성, 발열체크, 좌석 간거리두기 등)

□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안내

- 기 간 : 2020. 11. ~
- 대 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독거노인
- 지원항목 : [붙임 2] 참조
- 신청방법 : 공음면사무소 민원실 방문 신청
- 문 의 처 : 고창군청 종합민원과(☎063-560-2382)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창군 도서관 이용시간 변경 안내

- 기 간 : 2021. 01. 19.(화) ~ 별도 공지 시까지
- 대 상 : 관내 도서관 7개소(공공도서관 2, 작은도서관 5)
- 내 용

구 분		운영시간	운영내용	비 고
고창군립 도서관	자료실	평일 09:00~ 20:00 일요일 09:00~18:00	- 자료실, 열람실 전체 좌석 수의 30% 개방	고수해마루 아산선운산 무장글샘 대산큰별 흥덕가온누리
	열람실			
고창군립 성호도서관	자료실	평일 09:00~ 20:00 토요일 09:00~18:00		
	열람실			
작은도서관 5개소		평일 09:00~18:00 토요일 휴관		

- 협조사항
 - 출입자 발열검사 및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 도서관 내 인원 제한 및 거리두기 준수

□ 작은영화관 「동리시네마」 운영시간 변경 안내

- 기 간 : 2020. 12. 21.(월) ~ 상황 진정 시까지
- 내 용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운영 시간	09:00~00:00	13:00~22:00	20.12.21.(월)~ 별도 공지 시까지
휴 관 일	연중무휴	매주 월요일, 화요일	

- 협조사항
 - 방역수칙 준수(마스크 착용, 방문기록 작성, 발열 체크, 좌석 간 띄어 앉기 등)
- 문 의 처 : 동리시네마(☎063-564-1340)

영화진흥위원회와 관객이 함께 만드는
안전하고 즐거운 영화관람 캠페인

모든 요일 5천원 할인

인터넷  편집촬영권 불면가능



일상 속 영화두기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영상위원회

동리시네마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이 무엇인가요?

생활 속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불편민원을
직접 출동·해결하여 군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1 기초생활수급자
- 2 차상위계층
- 3 65세이상 독거노인
- 4 읍·면장 추천자

도배 접수

각 읍·면사무소에서
연초 1회(2~3월 사이) 접수 가능합니다.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종합민원과 민원팀

Tel 063) 560-2382

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



무엇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1 스위치, 콘센트 등 전기
- 2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도배
- 3 문고리, 방충망 등 집수리
- 4 수도꼭지, 샤워기 등 상하수도



방충망·보일러 접수

하·동절기에만
접수 가능합니다.

【산업경제팀】

□ 2021년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30일부터 출산 후 150일 까지 180일 기간 중
- 지원대상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 제외대상
 - 겸업 농어업인으로 직장재직자, 사업자등록자 등은 제외
- 적용범위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이 경영 또는 경작하는 영농·영어 관련 작업(35일 이상)을 위주로 지원하되, 가사작업 일부(35일 이하) 포함
- 지원단가/일 : 70,000원(보조 63,000원, 자부담 7,000원)
- 지원일수 한도 : 70일
- 구비서류 : 출산(예정)증빙서 1부(출생신고자는 증빙서 불필요, 출생미신고자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증거 서류),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2021년 새내기 농업학교 모집 알림

- 교육명 : 2021년 새내기 농업학교
- 모집기간 : 2021. 1. 18. ~ 2. 15.
- 제출서류 : 교육신청서 및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
-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 신청장소 :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각 읍면 농업인상담소 및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 교육기간 : 2021. 3. ~ 11.(매주 수요일 14:00 ~ 18:00)
 - 코로나19로 인하여 교육 잠정 중단, 변경 또는 연기
- 교육장소 :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등
- 교육시간 : 연 100시간(예정)

□ 「농어민부채경감법」 개정에 따른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알림

- 지원사유 :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사유에 병해충 추가 명시
 - (기존) 재해, 가축질병, 적조 등
 - (개정) 재해, 가축질병, 병해충, 적조 등
- 지원조건 : 농업경영회생자금의 거치기간을 2년 연장
 - (기존)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개정) 5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2021년 청년농업인 생생동아리 지원사업 알림

- 접수기한 : 2021. 1. 29(금)까지
- 접수처 : 고창군 농업기술센터 농업경영팀(560-8831)
 - 방문접수 및 e-메일 접수(접수 후 전화 확인 필수)
- 지원대상 : 만45세 미만 청년농업인 8~12명으로 구성된 동아리
- 개 소 수 : 7개 동아리
- 지원단가 : 2백만원/1개 동아리
- 지원내용 : 청년농업인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네트워킹 비용 지원
 - 영농 정보교류 활동, 선배농업인 초청 강의, 그룹스터디, 문화활동 등

□ 2021년 귀농귀촌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알림

- 접수기한 : 2021. 2. 3(수)까지
- 지원대상 : 고창군 이외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2016년 1월1일 이후 귀농귀촌한 세대주로,
빈집 또는 노후주택을 구입(임차)후 수리하여
정착하고자 하는 자
 - ※ 임차의 경우 5년 이상 임대차 계약한 경우에 한함
- 지원내용 : 농가주택 수리 및 개보수 정원
- 지원범위 : 1세대 당 3,000천원 이내

□ 2020년산 국산 두류(콩·팥·녹두) 수매안내

- 수매대상 : 2020년산 국산 두류(콩, 팥, 녹두)
- 수매기간 : 2020. 12. 1.~2021. 3. 31.
- 수매장소 : aT, 농협
- 수매품종 : 대원콩, 대풍2호, 선풍 품종(기 수매약정을 체결한 물량)
- 수매가격 : '20년 국산 두류 수매 계획에서 예고했던 가격 결정 기준으로 수매('20년 12월~'21년 1월 KAMIS 상품 평균 가격의 83%)
 - 일반 수매가격으로 농가에 우선 지급하고, 최종 정산은 수매 가격이 확정된 이후 '21년 3월까지 지급
 - 품종 구분 수매물량은 대립종 특등급, 1등급에 한정, 이외 등급은 일반 수매물량으로 전환하여 수매 가능

□ 고창 농특산물 설명절 꾸러미 선물세트 판매홍보

- 판매기간 : 2021. 1. 18.(월) ~ 2021. 2. 9.(화)
- 판매수량 : 1,000세트
- 판매품목 : 9개(높을고창쌀 삼색보리, 검정볶음땅콩, 생들기름, 발사믹식초, 고추장 등)
- 판매금액 : 한반도세트(3만원), 첫수도 세트(5만원) 높을고창쌀(5만원)
- 문 의 처 : 고창군청 농어촌식품과 수출마케팅팀(☎063-560-2701)
- 주 문 처 : (주)고창황토배기유통(☎063-564-2009) 【붙임1】

□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지원사업 안내

- 신청기간 : 2021. 1. 11.(월) ~ 2021. 2. 5.(금)
- 신청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 사용기간 : 이용권 수령 후 ~ 2021. 11. 30.(화)
- 사용시설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숲채워, 자연휴양림, 수목원, 정원 등
- 신청방법 : 이용권 홈페이지 온라인신청(www.forestcard.or.kr)

□ 고창군 농어촌육성사업지원기금사업 신청 및 홍보

- 신청기한 : 2021. 2. 5.(금)까지
- 신청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전전년도 종합소득금액증명원,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접수방법 : 면사무소(산업경제팀)에 신청인 방문접수
- 지원대상자
 -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1년 이상 동안 고창군 관내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으며,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농림축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가
 - ※ 제외대상(기금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 ① 전전년도 농림축수산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 7백만원 이상인 사람
 - ② 농어촌육성기금을 상환한 후 2년 이내 신청한 사람
 - ③ 농어촌육성기금 지원받고 현재 상환 중인 자
 - ④ 2018년, 2020년 농어촌육성기금 원금·이자 납부하여 연체료 감면 받은자
- 융자한도 : 농가당 2천만원 이내
 - 기금의 융자이율은 농협과 협약하여 이자율을 적용하되, 농가부담은 1%로 하고, 차액은 기금에서 이자 차액 보전
- 융자기간 : 1년거치 2년상환

□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신청안내

- 2021년도 지원대상품목 선정을 위해 해양수산부가 모니터링한 59개 품목 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어업인 및 생산자단체등에서 요구하는 품목을 신청받고자 합니다.
- 이장님들께서는 FTA 이행으로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어업인·단체가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홍보 및 안내 부탁드립니다.

< 2021년(2020년 피해기준) 해양수산부 모니터링 품목(59개) >

가리비, 가오리, 가자미, 갑오징어, 개량조개, 고동, 고등어, 까나리, 꽃게, 낙지, 날개다랑어, 노래미, 눈다랑어, 닭새우, 대구, 말, 멧게, 떡장어, 메기, 멸치, 명태, 문어, 미꾸라지, 미역, 민대구, 바지락, 백합, 뱀장어, 복어, 볼락, 붕어, 붕장어, 상어, 새우, 새조개, 서대, 소라, 송어, 아귀, 오징어, 우뚝가사리, 이빨고기, 임연수어, 자라, 재첩, 전갱이, 전복, 젓새우, 정어리, 조기, 쭈구미, 쥐치, 참다랑어, 청어, 키조개, 피조개, 해삼, 홍어, 홍합

□ 반려견 준수사항 안내 및 야생화된 들개 포획 협조 요청

- 최근 야생화된 들개들이 무리를 지어 다니며 주민들에게 불안, 위화감 조성 및 상해를 가하는 일이 있는 관계로 이장님들께서는 목줄과 입마개 등 본인 소유의 개를 묶어 키울 수 있도록 마을방송을 해주십시오

마을 안내방송(안)

- 최근 야생화된 들개들이 무리를 지어 다니며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일이 있어 다음과 같이 협조를 요청하오니, 반려견을 키우시는 가정에서는 반드시 묶어서 사육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를 풀어서 사육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또한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반드시 동물등록(무료)을 하여 주시고 인식표를 부착하여 주시기 바라며,
 - 동물 미등록시는 마리당 20만원, 인식표 없이 거리를 배회하는 경우 마리당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리오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협조 바랍니다.
- ※ (문의사항은 고창군 축산과 063)560-2629 로 연락바랍니다.)

□ 2021년 고창 농특산품 통합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 신청안내

- 신청기간 : 2021. 1. 21.(목) ~ 2021. 2. 4.(목)
- 신청대상 : 고창 농특산품 통합브랜드(높을고창) 사용허가 승인받은 생산자단체
- 지원내용 : 신선농산물 유통 통합브랜드 포장재 지원
- 지원단가 : 2,000원/매당 (보조 50%, 자담 50%)
- 접 수 처 : 공음면사무소 산업경제팀(☎063-560-8252)

□ 2021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폐지 알림

-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은 2021년부터 미추진 되오니 농업인, 생산자 단체 등에 논 농업에 차질이 없도록 마을방송 등 홍보 부탁드립니다.

□ 겨울철 재해예방 및 피해 최소화 대책 홍보

○ 사전준비

- 시설 구분 및 안전 적설심 확인
- 내재해형 규격에 맞는 시설하우스 설치
- 하우스 밴드(끈)를 팽팽하게 당겨두기
- 하우스 외피복 비닐 찢기와 천창 개방
- 보온덮개·차광망을 걷어 두거나 비닐 덧씌우기
- 보강지주(보조 지지대) 설치
- 단동하우스 지붕 위와 하우스 동간에 쌓인 눈 수시 제거
- 연동하우스 곡부 눈 제거
- 난방기 가동 등

○ 사후대책

- 안전에 유의하며 시설하우스 주위에 쌓인 눈의 신속한 제설 작업 실시
- 폭설 피해시 시·군 행정기관 및 농업기술센터 등에 즉시 신고하고 피해복구 지원을 요청하여 무너진 시설하우스 및 축사 응급 복구
- 파손된 골조 및 피복 비닐의 긴급 보수, 작물 동해 피해 예방
- 시설하우스 내부에 난방장치 가동으로 농작물 동사 방지
- 주변 배수로 정비 및 환기 실시, 시설원예 병충해 방제 대책 추진
- 피해 농작물의 관리 등 대(對)농민 기술지도로 농작물 피해 최소화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안내

사업목적	○ 미래세대의 건강을 위해 임산부에게 건강한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여 국민 건강, 환경보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구현
사업 주요내용	○ 임신부터 출산·이유기까지, 건강한 친환경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12개월 (연 48만원 수준)간 공급
국고보조 근거법령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조, 제55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9조, 제10조
지원자격 및 요건	○ 비대면자격확인서비스 검증 결과 임산부로 확인된 자 또는 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산모수첩 등을 통해 임신 및 출산 사실이 확인된 임산부
지원한도	○ 임산부 1인당 연 48만원(자부담 9만 6천원)
재원구성	○ 보조 80%, 자담 20%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3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임산부 또는 출산 후 1년 이내인 산모

□ 2021년 두류·맥류 계약재배사업 추진 안내

- 목 적 : 두류·맥류 재배 농업인(생산자단체)과 가공업체간 안정적인 생산·공급체계 구축(국고용자 80%, 자부담 20%)
- 품 목
 - 두류 : 콩, 팥, 녹두(친환경 포함, 풋콩 제외)
 - 맥류 : 밀(친환경 포함)
- 사업대상자 : 생산자 단체, 가공업체 등 *밀은 aT관리로 사업추진
 - 농협경제지주 관리 : 지역농협, 조공법인
 - aT관리: 농업법인, 상법상법인, 개인사업자 등 농협경제지주관리 이외 조직대기업은 제외
- 지원조건 : 농협경제지주(사업관리자)에는 5년간 지원, 농협경제지주는 사업대상자(지역농협)에게 11개월 지원, aT(사업관리자)와 aT관리 사업대상자에게 5년간 지원
- 사업의무량 : 지원자금(농안기금)의 125% 이상 2021년도 두류·맥류 계약재배사업 추진 안내

□ 농지 임대수탁사업 신청 안내 및 홍보

- 사업배경
 -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는 개인 간 임대 및 사용 원칙적 금지
 -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 농지 처분 의무가 주어지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농지 처분시까지 매년 부과
 - 예외적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를 임대 위탁하여 계약 체결할 경우 그 계약기간동안 직접 자경하지 않아도 처분하지 않고 계속 소유 가능
- 사업대상
 - 1996년 이후 매매·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전·답·과수원
 - 단, 상속농지는 10,000m²까지 임대 및 사용대차 허용(초과면적은 농지법 적용 대상)
 - 제외농지
 - 처분명령 받은 농지 및 1,000m²미만의 소규모 농지
 - 주거, 상업, 공업지역 농지 및 각종 개발계획구역내의 농지
- 사업내용
 - 자경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였으나 농사를 짓지 못하는 사람의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임대하여 영농희망자(최소 5년이상)가 장기임차
- 임대수탁사업(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장점
 - * 농지 양도 시(팔 경우) 양도세 감면
 - 농지 양도 시 사업용 토지로 분류되어 일반과세율 적용(6~38%)
 - * 농지를 직접 자경하지 않아도 처분명령을 받지 않음

높을 **高** 고창

한반도 첫 수도 **고창**

고창 농특산품 설명절 꾸러미 선물세트



높을고창 쌀
(수광벼/특품)
5만원/10kg

"고창농가의 정성을
듬뿍 담아 드립니다"



3만원

한반도 세트

5만원

첫수도 세트

삼색보리	경정북음땅콩	생들기름
청맥 500g	고창이염무드 300g	호아농장 180ml

토굴고추장	명인간장	요리죽염	복분자발사미식초	통곡후추그라인더
토굴발효 320g	효심당 350ml	삼보죽염 180g	진농식물 100ml	해리농협 60g

★문의처 : 고창군청 농어촌식품과 수출마케팅팀(T.063-560-2701)
 ★주문처 : (주)고창황토배기유통(고창읍 녹두로 1265)(T.063-564-2009)
 ※예금주 : (주)고창황토배기유통 / 농협 301-0150-7794-81 ※택배비 회사 부담

【보건지소】

■ 코로나 19 감염병 예방홍보

- . 사람이 모이는 장소피하기
- .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 . 흐르는 물에 30초이상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로 가리고 하기
- . 매일 두 번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 . 타 지역 방문자제하기

■ 안전혈관 숫자알기 상설교육장 운영

- 기 간 : 2021. 1. ~ 12. (매주 월요일) 09:30 - 11:30
- 장 소 :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 대 상 : 지역주민 누구나
- 내 용
 - 고혈압·당뇨병·이상지질혈증 조기발견을 위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무료측정
 - 측정결과 상담 및 건강관리수첩 배부
 - 심뇌혈관질환예방 및 건강생활 실천교육

■ 치매조기검진(선별검사) 대상 연령 확대 홍보

- 추진목적 : 검진연령 확대로 치매 조기발견, 체계적인 치료 및 중증화 방지, 지속적인 관리 지원
- 내 용 : 치매조기검진 연령 60세 → 55세로 확대
- 검진장소 : 고창군치매안심센터,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신분증 지참)

■ 국가 암 (무료 암검진) 및 건강검진 안내

- ▶ 검진대상 : 짝수년도 출생자
 - 국가암 검진대상(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료 하위50%이내 납부자 및 피부양자
 - 건강보험관리공단 검진대상 : 암 검진시 10% 본인부담 대상자
(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 아님)
 - ▶ 검진항목 : 6대암(위암, 유방암, 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폐암),
기본 건강검진
 - ※ 대장암검사 : 만 50세 이상 연1회 실시(분변검사 필수)
- ☎ 문의전화 : 560-8705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등록 신청

- 기 간 : 연중
- 장 소 : 보건지소 및 송산, 평촌진료소 (반드시 신분증 지참)
- 내 용 :
 - 19세 이상인 사람이 나중에 아파서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을 때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서류 (신청 후 본인의사 변경시 철회 가능)
 - 연명의료 :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 폐렴구균 및 대상포진 예방접종 안내

- 기 간 : 연 중
- 장 소 : 공음보건지소
- 접종시간 : 매일 09:00~12:00(오전중)
- 폐렴대상 : 60세이상 미접종자
65세이상은 석정웰파크, 고창병원에서도 접종가능(무료)
- 대상포진대상 : 만50세이상
- 금 액 : 85,000원
- 준 비 물 : 신분증 지참